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2년 4월 13일(수) · 주간 제15호 · 통권 제1566호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구독료 월30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2/ 4/ 13 통권 156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이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균등동업자 간 개인사업자 방법과 공동사업 방법 간 세금쟁점비교 등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특례적용 가능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부부간 아파트 · 주택 등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비교〉

15년전 6억 취득, 현 시세 24억(전세 12억), 50%인 12억 증여

개념구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3주택 등 다주택자인 경우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방법	12억 전액 증여	6억 증여	6억 전세금	12억 전액	6억 증여	6억 전세
세금	증여세	증여세	양도세	증여세	증여세	양도세
양도금액 증여금액	12억 – 배우자 공제 6억 = 과세표준 6억	6억 – 배우자 공제 6억 = 과표 0	양도가 6억원 취득가 상당액 1.5억원 = 비과세 가능액 $\frac{12}{24}$ ×(6–1.5억) = 양도소득 2.25억	12억 – 배우자공제 6억 = 과세표준 6억	6억 – 배우자 공제 6억 = 과세표준 0	양도가 6억원 – 취득가 상당액 1.5억 = 양도소득 4.5억원
세율 세액	1억×10% +4억×20% +1억×30% = 1.2억	0	장기보유공제 1.8억 과표 = 0.7억 세금 0.13억	1억×10% + 4억×20% +1억×30% = 1.2억	0	다주택자 중과세율 70% 적용 = 3.46억
취득세 (3%)	0.36억	0.18억	0.18억	0.36억	0.36억	0.36억
산출세액	1.56억	0.18억	0.31억	1.56억	0.36억	3.8억
합계세액	1.56억	0.49억		1.56억	4.16억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66호 / 주간 15호 2022. 4. 13. (수)

· 발 행 인 : 이 윤 선
· 제 작 : ㈜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부간 아파트·주택 등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비교	표지
긴급시사해설	- 균등동업자 간 개인사업자 방법과 공동사업 방법 간 세금쟁점비교 등	2
CEO에세이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이유	3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종업원 퇴직위로금 -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 비용공제 - 조건 만족 시 환불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7
매일절세재무요점	- 거래시장별 양도소득세 기준 -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9 10
직장인Survival	변신을 위한 10가지 방법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소득-5589, 2021.09.16) -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 매출감소동해산불 110만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특례적용 가능함	13
세무정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5
회계정보	- '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표	38 43
노무정보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균등동업자 간 개인사업자 방법과 공동사업 방법 간 세금쟁점비교 등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개념, 구분	단독 개인사업장+직원	균등 공동사업장(동업)
운영방법	1인이 전액출자, 다른 1인은 근로제공	2인이 균등출자 실질 동업
사업자 등록	1인의 단독 개인사업자 등록	공동 1사업자 등록 + 동업계약서 첨부
매출 부가세	2인 노력 매출×10% 부가세	좌동(매출, 부가세는 같음)
매입 부가세	총괄구입×10% 매입부가세	좌동(매입, 부가세는 같음)
4대보험 등	사업자도 근로자 직장부과에 포함 통지됨	사업장 성립신고로 균등배분 사업자 소득금액대로 직장부과
종합소득세	1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 근로소득공제 사업자 1인은 총이익(1억) - 근로자 급여(5천) = 종합소득 5천만원	• 공동사업이익 1억÷2인 = 1인당 종합소득 5천만원 • 이익 클수록 총소득세 적음
이익증가배분	근로자 1년 고정급여 + 연말 증가차익 50% 급여가능	좌동 = 증가된 총이익 ÷ 2인
성과배분 약정	동업자인 사업자와 근로자간 기여이익 배분 명시해야 분쟁없이 지속됨	공동사업자간 노력 · 시간 · 역할 등 분명히 해야 함
적용 현황	영업, 대외적 역할은 사업자, 기술 · 제조 · 대내역할은 근로자	2인 모두 영업 · 기술 · 역할 유사한 경우 성립
장단점	장점 : 경영의사결정의 안정성(단독납세) 단점 : 동업근로자는 직원신분 주장	장점 : 상하관계 아니므로 소신경영 단점 : 동업자 의견 불일치시 깨짐(연대납세의무 등)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이유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의 두차례 모두 전범국가였다. 그래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후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소련과 미국 · 영국 · 프랑스에 댓가를 치루었다. 그러면서도 분단된채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부흥을 일으키며 1990년 동·서독 통일도 이루면서 세계 최강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들만의 '라인자본주의'의 특징은 산업자본과 금융, 노사간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제조업 중심의 장기성장모델'로 독일주식회사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독일은 인구규모가 8,310만명이고 경제규모도 미국(인구 3억3,200만명)과 일본(1억2,500만명)보다 작지만 수출액은 1조3,800억 달러로 최상을 달리고 있다. 이는 기초과학과 기술연구에 힘쓴 결과 지금까지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이 배경이다.

또 독일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출발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실용교육이 발달했다. 마이스터 제도는 장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미국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교수의 지적처럼 '독일식 교육과 제조업 수출경쟁력'이 독일의 강점인 것이다. 세계경제대전에서 독일의 지멘스와 SAP, 폭스바겐과 벤츠, BMW 그리고 BASF와 바이엘등 글로벌 대기업은 항공모함이고 '히든 챔피언'들은 쾌속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의 지적처럼 히든 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매출액 40억 달러이하 수준의 강소기업이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1,600여개 세계55%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20~30개 수준이다. 유치원 3년 초등학교 4년이 끝나면 기능직업을 택할지 대학을 택할지 선택한다. 약330개 공인된 직업교육에 약48만개 기업이 직업교육생을 받아 키운다.

대학은 30여%가 선택하고 60~70% 다수가 공인된 직업교육을 선택한다. 반면에 한국은 고등교육1위, 대졸취업율 OECD 31위, 최하위권이다.

못배운게 한(恨)이었던 기성세대가 자식들은 억지로라도 대학에 보냈다. 과거에는 고졸 80%

이상, 요즘은 70%가 대학에 진학한다. 2020년 신생아는 27만명이었다. 대학교1년 입학생수 55만명에 비해 앞으로 19년후 27만명 모두가 대학에 간다한들 대학교, 반이상이 없어져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대졸자 65%가 최포족(취업을 포기한 족)이라는 게 나왔다.

대졸자를 못 쫓아가는 적정일자리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현재 대졸자수는 1,512만명이고 적정일자리는 1,080만개 뿐이었다.

대졸자가 취업할수 있는 화이트칼라의 수준은 독일처럼 고졸30% 수준이내다. 한국처럼 고졸 7~80%가 대학을 나오면 실업자가 되든 하향 일자리나 비정규직으로 가야한다. 대졸 비정규직은 284만명으로 70여만명이 늘었다.

취포족, 대졸 실업자, 비정규직 등 모두가 자영업자를 향하는 잠재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숙한 자영업으로 가족의 재산을 말아먹고 OECD 최고수준인 43%이상의 한국노인 빈곤율을 높여왔던 '캉가루족'이 되곤 했다. 한국교육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1일 (금)	4월 4일 (월)	4월 5일 (화)	4월 6일 (수)	4월 7일 (목)
미 달 러	(USD)	1210.70	1216.10	1216.70	1212.60	1219.10
일 본 엔	(JPY)	993.88	991.64	991.00	981.11	984.14
캐 나 다 달 러	(CAD)	968.29	971.21	974.18	970.97	971.01
홍 콩 달 러	(HKD)	154.58	155.22	155.30	154.80	155.55
위 안 화	(CNH)	190.44	191.27	191.13	190.30	191.13
유 로 화	(EUR)	1340.55	1343.06	1335.08	1322.64	1328.39
호 주 달 러	(AUD)	907.12	911.16	917.70	919.39	916.09
싱 가 폴 달 러	(SGD)	893.51	896.27	896.91	892.14	896.17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7.94	288.83	288.49	287.99	289.23

종업원 퇴직위로금

Q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맞는지요?
2. 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기재하나요?
3. 퇴직연금(DB)가입자로 과세이연되어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데
퇴직위로금부분에 대한 금액만큼 원천징수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A 종업원의 퇴직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다른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합산 기재하면 되며, 퇴직연금에 의해 과세이연되는 부분을 제외한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Q 양도인 : 일본 법인(비거주자)
양수인: 내국인
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세율, 그리고 양도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법률(조문)을 알고싶습니다. 양도인이 비거주자라 거주자와는 다른 부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를 하는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가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느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와 소득세법 제12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용공제

Q

1.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국외에 체류중인 비상장 법인(부동산/임대업)의 대표이사(1인주주 이면서 급여소득 신고)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 관계로 임차인 변경으로인한 임대차 계약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왕복 항공료등을 위 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국외 체류자가 국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위해 발생하는 항공료는 임대사업과의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건 만족 시 환불

Q

당사는 인터넷 교육 업체입니다.
당사의 제품 중 조건 충족 시 환불 제품이 있습니다.
가령 8만원 제품을 한달간 사용하고 사용중 몇시간이상을 공부하고,
한달 종료 후 사용후기를 올리는 경우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건 충족 후 환불받아가는 경우가 약 70프로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 환불 금액을 매출 취소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처리해도 될지 좀 애매한데 어찌하면 될지요?

A

해당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조건만 충족되면 환불해주는 경우가 70%이면, 매출취소는 아니고 소득활동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과 신고·납부 절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방법이 약간 변경되었는데,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마감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시 · 군내에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의무자가 되는데,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모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액이 산출되면 여기에 부가되어 과세된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①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내국법인(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 있는 외국법인, ③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①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②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 ③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 ④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 내에 각각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집단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1%~2.2%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법인소득세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800만원+3천억원 초과금액의 2.5%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지방소득세 표준 산출세액을 사업장별 종업원수비용과 건축물 연면적 등 이익기여도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내의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서 일괄 납부한다.

사업장별 안분 계산 산식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left[\left(\frac{\text{해당 시·군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frac{\text{해당 시·군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right)\div 2\right]\times\frac{\text{관할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text{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할 때,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며, 이때의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 등으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도 포함한다.

또한 안분 계산시의 건축물 연면적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으로 하며,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연면적이 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거래시장별 양도소득세 기준

구분	'16.4.1. 이후 양도	'18.4.1.이후 양도	'20.4.1. 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원 이상	1% 또는 15억원 이상	1% 또는 10억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 이상	2% 또는 15억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원 이상 ('17. 1. 1. 이후)	4% 또는 15억원 이상	4% 또는 10억원 이상

화 거래시장별 증권거래세 기준

구분	2021~2022년	2023년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코넥스	0.1%	0.1%
기타	0.43%	0.35%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가구원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

자영업자 사업소득 산정 조정률
농업·임업·어업·소매업 30% → 25%
제조업·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45% → 40%
숙박업·운수업 60% → 5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75% → 70%

주택 월세와 보증금의 소득세 과세

주택 수 (부부합산)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 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 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 ·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 · 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 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 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

변신을 위한 10가지 방법

1. 자신만의 재능을 찾아라.
특별히 배운 적이 없는데도 방법을 잘 알고, 쉽게 이뤄냈던 일이 무엇인가?

2. 변신의 단계를 파악하라.
변신은 무관심-심사숙고-준비-실행-유지 단계의 순으로 진행된다.

3. 시간관리가 관건이다.
시간을 분해하고 마감을 자주 만들어라. 긴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4. 퇴근 후 3시간을 활용한다.
딱딱하고 지루한 일과 부드럽고 재미있는 일을 적절히 섞어 시간을 배정하라.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공부하라. 독서나 외국어학습이 좋다.

5. 스타일이 성공을 부른다.
스케쥴에 따라 의상, 신발, 소품, 메이크업 색상까지 고려해본다. 스타일의 완성은 다양한 표정이다.

6. 창의성을 개발하라.
시대의 유행을 읽어라. 아이디어를 메모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다. 일을 놀이처럼 즐긴다.

7. 삶을 단순화하라.
일과 상관없는 취미생활을 가져라. 자신만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라.

8. 인간관계를 중시하라.
회사 이외의 인맥을 만들라.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단 재정적 도움은 제외한다.

9. 효과적으로 사과하라.
자신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사과하라.
조건을 달지 말고 사과하라. 가까운 사람부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라.

10. 실패의 의미를 깨닫자.
실패는 무언가 새로 배웠다는 것을 뜻한다. 실패가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중단하는 것만이 실패하게 만들 뿐이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특례적용 가능함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령소득-5589, 2021.09.16

▌질 의

- 질의법인은 '21.3월말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이후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임
-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이었을 당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21.2월중 임직원이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 나머지 주식매수선택권은 질의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행사할 예정임

질의내용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질 의

-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인도시기 지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 지급 외에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서지체상금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우
  -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 신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469, 2021.09.30

▌질 의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임대목적 자산을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중

-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임차인 등에게 임대자산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내에 승계받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 해당자산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던 렌탈자산을 승계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 또는 시장에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903, 2021.07.22

▌질 의

• 신청법인은 '20.7월 **도 **시 **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상가")을 수분양자들에게 '22.2월까지 분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21.1월 쟁점상가 신축부지에 지반붕괴가 발생하여 공사지연 및 그에 따른 입주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분양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가액의 2%를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 변경된 인도기일('22.12월 예정) 등이 반영된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질의요지

• 상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인도시기 지연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 지급 외에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공급가액에서지체상금을 추가로 감액하는 경우

- 추가 지체상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 신

상가를 분양공급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추가로 일정률의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추가 지체상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매출감소동해산불 110만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국세청이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외의 법인 등 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명 늘어났다.

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9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조기 환급대상 및 모범납세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 것이다.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을 통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1~2분 토막 영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검증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당한 환급신청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할 것"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6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과 세무 검증 배제 등 현행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추가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 인하…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 보조금 지원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를 인하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는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에서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기준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운전자 등이 대상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한다. 이로써 L당 12원이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국세청, 2022. 4

조세지원 개요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 의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이러한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17.12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금 감면은 국내외 기업간 차별을 두는 유해조세제도"라며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18.12.2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3 외국인 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상의 정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외촉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다음의 국제협력기구를 말합니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 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체류허가를 받거나, 또는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촉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나. 외국인투자(외촉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인이 외촉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투자금액(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 등의 일부 양도 또는 감자 등으로 금액 또는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함)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과 아래와 같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또는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인이 외촉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 · 시설 등에 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

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 작성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4)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그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촉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①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다. 외국투자가(외촉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촉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라. 외국인투자기업(외촉법 제2조 제1항 제6호)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마. 출자목적물(외촉법 제2조 제1항 제8호)

출자목적물이란 외촉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2) 자본재

3) 외촉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 집적 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

용에 관한 권리

5)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 · 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재산

6) 위 나. 2)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7) 다음의 주식

①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② 외촉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 국내에 있는 부동산

9) 외촉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바. 자본재(외촉법 제2조 제1항 제9호)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 차량 · 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 · 기자재 · 시설품 · 기구 · 부분품 · 부속품 및 농업 · 임업 ·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 종자 · 수목 ·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 · 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 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됩니다.

이 절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 등의 신고시 해당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

을 수 있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

② 취득 ·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78의3으로 이관)

③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제

* ①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제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약>

조특법 § 121조2①②, 조특령 § 116의2①~⑦⑨⑩⑯⑰⑱		
구 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소득세
◦ (1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사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직접 관련된 소재·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 수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설치·운영(미화 2백만불 이상)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2호)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 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으로 감면	3천만불 이상 : 제조업 등 2천만불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청소년 수련시설 등 1천만불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항만시설 운영업 등 2백만불 이상 : 연구시설 3천만불 이상 : 공동사업	
◦ (2호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1 ◦ (2호의8)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1천만불 이상 : 제조업,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 청소년수련시설,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등 5백만불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항만시설운영업, 공항시설운영업, 의료기관 1백만불 이상 : 연구개발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2호의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의3 ◦ (2호의7)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0① ◦ (2호의9)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 (2호의4)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62	외국인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 사업비가 1억불 이상인 경우	

◦ (2호의5)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 5백만불 이상	
◦ (2호의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2	제조업 등 : 1천만불 이상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 5백만불 이상 연구개발업 : 2백만불 이상	
◦ (3호)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①2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①5	제조업 : 1천만불 이상 복합물류업 등 : 5백만불 이상	

2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다음에 설명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조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합니다.

가.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신성장 · 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합니다.(미화 2백만불 이상 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구 분	분 야
1.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전기 구동차
2.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착용형스마트기기, IT 융합,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보안
4.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부품,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OLED), 3D프린팅, AR 디바이스
6.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 및 6세대 이동통신, UHD(Ultra-High Definition)
7.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학
8. 에너지신산업·환경	ESS(Energy Storage System),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 원자력

9.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 플라스틱, 타이타늄, 구리합금, 몰리브덴, 특수강, 기능성탄성·접착 소재,
10.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 로봇, 로봇공통
11.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12. 첨단소재·부품·장비	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장비,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새만금지역은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새만금위원회)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의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조 제4호에 따른 공

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④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신성장동력 · 원천기술수반사업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일 것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⑤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 상기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⑥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특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3항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 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다.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안에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호텔업 및 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2006.2.9.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⑤ 조특법 제121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2.22.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일 것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⑥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제2호의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마.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기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 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 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아래의 ②연구개발업은 2백만불 이상, ③물류업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

① 제조업

② 연구개발업

③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④ 조특법시행령 제5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⑤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중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각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3 법인세의 감면방법

가.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감면대상사업소득	산출세액	감 면
		가 산 세	감면배제
	비감면사업소득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나. 감면기간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121의2 2항)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1호) ◦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2호)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호의3)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호의4) ◦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2호의5)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사업(2호의7)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2호의 8, 9) ◦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3호)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2)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축소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 없이 가동 중인 기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제12항)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50%감면, 다음 2년간은 30%감면

3) 감면기산일

감면기산일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입니다.(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

이때,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합니다.

4) 사업개시의 신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함)의 확정은 조세감면의 기산일과 관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특령 제116조의4)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합니다.

다. 조세감면의 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자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KOTR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조세감면신청기한(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

① 신규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② 변경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조특법 제121조의2 제10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3)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조특법 제121조의2 제7항)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 전 또는 증자신고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조특법 제121조의2 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 신청,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사전확인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비감면사업으로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증자분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21조의4를 적용합니다.

1) 조세감면의 신청 및 결정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당초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

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을 면제합니다. (2006.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개시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합니다.

3) 감면의 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전입됨으로써 당해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으로 한정)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 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합니다.

유상증자 직후 증자액 만큼의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 없이 조세감면기간이 연장되는 조세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자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중 새로이 취득 · 설치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면세액에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2012.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전에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증자를 통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②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4) 증자로 인하여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합니다.(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8호 사목)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2))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외촉법 제5조 제2항 제1호)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봄)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① 외국법인 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1호)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주주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상기 "㉮", "㉯"를 계산함에 있어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

㉱ 상기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계산은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함

②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5이상 직·간접으로 소

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 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대여금 상당액(조특법 제121조의2 제11항 제2호)

③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조세면제>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절 차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주 등의 투자로 인해서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함(외촉법 제21조제1항)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 함(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
기 본 요 건	<외촉법시행령 제2조 제2항> 투자금액 요건 : 1억원 이상투자비율 요건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출 자 목적물	출자목적물 : 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 1.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등)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원화) 2. 자본재 3.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지적새산권 등 5. 국내지점 폐쇄 또는 내국법인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6.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환액 7. 주식 8. 국내소재 부동산 9. 기타 내국지급수단	<조세감면배제>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이 아래의 경우조세감면을 배제함(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 된 외국 법인의 주식 2.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투 자 유 형	외국인투자가 위의 출자목적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유형에는 5가지가 있음(외촉법 제5조부터 8조의2까지) 1.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5.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 아래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함(조특법 제121조의2 제9항, 제11항) 1.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우회투자한 경우 그 소유지분 상당액 3. 외국투자가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 4.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인 투자

사. 감면세액의 계산(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 조특령 제116조의2 제14항)

$$\text{○ 감면세액} = \left(\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text{총과세표준}} \right) \times \text{감면비율}$$

$$\text{○ 감면비율} = \frac{\text{외국투자가자본금}}{\text{총자본금}} \times \text{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특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아래 ①의 금액에 ③의 금액 중 ②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조특령§ 116의2⑧, 조특칙§51)

①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 새만금사업지역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②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 · 새만금사업지역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 수입액의 합계액

③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 새만금사업지역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 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자.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최저한세 제도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에 산출된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7%(과세표준이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부분은 12%, 과세표준이 1백억원 이하인 부분은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조특법§132)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이러한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 등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야 합니다.

차.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3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 제3항)
②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④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5)
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
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⑦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14)
⑧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15)

상기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복시 공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공제세액} = \text{공제할 투자세액} \times \frac{\text{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text{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2)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5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12조의2)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법 제31조 제4, 5항)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특법 제32조 제4항)
⑥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62조 제4항)
⑦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제1항)
⑧ 법인의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제1항)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4조)
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85조의 6 제1, 2항)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99조의 9 제2항)
⑫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99조의 11)
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104조의24 제1항)
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8)
⑮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

의9 제2항)

⑯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17 제2항)

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0 제2항)

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1 제2항)

⑲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2 제2항)

3) 지방세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6항)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121조의2(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에 따른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감가상각의 의제(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상기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외촉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타. 구분경리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와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76조 6항과 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제143조)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

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규칙 § 75①)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②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②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합니다.

파.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⑭)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나.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 제1호의 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 (한도)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 제1호의 사업 :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 2018.1.1.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 ☆ 외국인투자누계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감면배제 외국인투자는 제외)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투자금액기준 한도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고용기준 한도금액을 적용합니다.

고용기준 한도금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고용기준한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하. 조세감면 결정의 효력 상실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 포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 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감면세액 등을 계산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① 3)

4 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가. 감면내용

1)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조특법 제121조의2 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 · 보유하는 재산(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합니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단,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단,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

5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면제(조특법 제121조의3)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가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② 외국투자가가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제2호의5·제2호의8·제2호의9 및 제3호의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3제1항 각어느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다. 면제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별지 제8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①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해당 자본재가 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외촉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 · 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라. 면제제한

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상기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 제4항)

'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금융감독원, 2022. 4

◈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 · 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 금융감독당국의 '21년도 회계부정신고 접수 · 처리 및 포상금 지급현황

- (접수) '21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 (감리) 회계부정신고로 최근 5년간 22사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감리 착수
- (포상금) '21년 중 5명에게 총 2.3억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 → 10억원)하였고, '20.5월 분 · 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Ⅱ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 '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익명신고)	22	19	44	93	64	72 (17)	92 (14)
전년대비 증가율	△31.3	△13.6	△131.6	111.4	△31.2	12.5	27.8

□ (처리현황)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 · 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17년) 2사 → ('18년) 6사 → ('19년) 3사 → ('20년) 6사→ ('21년) 5사

○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임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1년 조치 : 고의 3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

Ⅲ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하여 '21년도 중 총 2억 2,860만원(5명, 1인당 평균 4,57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전년 대비 1억 7,980만원 감소(44%↓)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3,403만원) 대비 1,169만원 증가(34.3%↑)

※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1억원 → 10억원, '17.11월)된 이후 신고자(13명)에 대한 '19~'21년 중 지급금액은 총 7억 15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396만원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08년~ '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지급건수	6	2	2	1	2	12	5	30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40,840	22,860	87,330
평균지급금액	835	1,370	1,805	330	5,970	3,403	4,572	2,911

Ⅳ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 1. 24.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 종전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제출 등으로만 접수

** 상장법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방법】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20.5월)하여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3 내실있는 익명신고제도 운용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접수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

4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 금융감독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17.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 인력제도(변호사*)를 운용 중

*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의 업무 수행

○ 한편,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 중

* 신고자의 ❶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❷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http://www.fss.or.kr) 오른쪽의「회계부정신고」클릭

(실명신고)

❷ "신고하기" 클릭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후 "다음단계" 클릭

❹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익명신고)

❷ "회계부정 익명신고" 클릭

❸ "신고하기" 클릭
❹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선택(동의 거부 가능)
❺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클릭

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우편번호 : 07321)

3) (F A X) 02-3145-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❶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 · 상담」클릭
❷ 하단 회계부정 신고 · 포상 하위의 "신고 · 포상" 버튼 클릭
❸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 윤리행정실(우편번호 : 03736)

3) (F A X) 02-3149-0390 (감리 · 윤리행정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 ·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2. 4

◈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1 개 요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 '21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사
('20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1년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이를 통해 소유 · 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 20년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사 중 28사, ' 21년은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었으며, 증가하는 추세

주기적 지정제도의 개요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22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정기총회+14일	'22.9.1.	'22.9.14.	'22.10.14.	'22.10.31.	'22.11.11.
소유주식현황 자료제출 (회사) ➡	지정대상 선정일 ➡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 ➡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

2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주요 내용)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 · 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상 서식)

○ (목적)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 ·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❶공문, ❷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❸대표이사 변동현황, ❹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❺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참조

○ (위반 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 ·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 (유의사항)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 · 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 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and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and

③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필요(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4.까지)(외부감사규정 §15③)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관련 유의 사항

1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2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3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전화문의 : (02) 3145-7761/7975

참고 - 제출방법 안내

1 첨부서류

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0.1.1
2. 위 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5% 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 제출 방법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 · 제출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을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대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2년)"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2022. 4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월 5일「고용보험법」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고용보험법」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1 특고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22.7.1. 시행)

❶ (추가 직종)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3.4.) 등을 거쳐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❷ (보험료 산정방식)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 · 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6월 고시 예정)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징수법 시행령 개정)

2 특고,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정당한 이직사유

○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고 · 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 예)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2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1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

○ 고용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

–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고보법시행령 · 규칙 개정)

* 지역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사업

2 지원 대상 정비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존 · 비속"으로 조정

*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 지원

**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 등록을 한 취업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 도모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3 지원 업종 선정 근거 마련

○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 마련 (고보법시행령 개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예) 공공성이 있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은 제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그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6월중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징수법시행령 개정)
  * 예) 고유번호증 등

4 서식 정비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완화

❶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 확인토록 정비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❷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음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호)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시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 개선 (고보법시행규칙 개정)

❸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22. 1월 시행)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연구자를 포함, 대학 · 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 완화 (징수법시행령 개정)

*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건설업 외) 또는 총 공사금액 60억원이상 사업(건설업)

□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라면서,

○ "이해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